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98	23	1981. 11. 28	총재 김 준 성

의 안 한국은행의 금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이월
일부 개정

의결사항 1. “한국은행의 여신업무 이월”, “한국은행의
기타어음 등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특별
이월 적용대상 결정”, “한국은행의 금통기
간에 대한 특별융자 이월”을 붙임과 같
이 개정한다

2 실시일자 : 1981. 11. 30

제의관계 한국은행법 제 72조
법개정항

제의회시 금통기관의 금리인하를 감안, 한국은행 대출
금리를 인하조정하고자 본건 전거와 같이
의결할 것을 제의함

관		개	
평		정 (안)	
한국은행 여신업무 비율		한국은행의 금상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비율	
제 할 안	1	2	3
	상 업 어 음	저 액 어 음	저 액 어 음
	① 영업채발행 (양노래서 및 인수도함) 또는 수외어음: 전 45%	저액채발행 (양노래서 및 인수도함) 또는 수외어음: 전 12.5%	저액채발행 (양노래서 및 인수도함) 또는 수외어음: 전 12.5%
	기 타 어 음	기 타 어 음	기 타 어 음
당 보 대 출	수 출 어 음	수 출 어 음	수 출 어 음
	① 왕자기간 135일 이내분: 전 10.0%	① 왕자기간 135일 이내분: 전 10.0%	① 왕자기간 135일 이내분: 전 10.0%
	외화표시금입어음	외화표시금입어음	외화표시금입어음
	②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표시 금융규정" 제4조에 의한 90일 과 왕자기간 해당종목의 당해종목별 소정 왕자기간 이내분: 전 10.0%	②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표시 금융규정" 제4조에 의한 90일 조과왕자기간 해당종목의 당해종목별 소정왕자기간 이내분: 전 10.0%	②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표시 금융규정" 제4조에 의한 90일 조과왕자기간 해당종목의 당해종목별 소정왕자기간 이내분: 전 10.0%

한		영		개		성 (안)	
구	분	이	항	구	분	이	항
보	대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
	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
		다만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이행분: 연 21.0%		다만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이행분: 연 21.0%		다만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이행분: 연 21.0%	
	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
		출		출		출	

한		영		개		성 (안)						
구	분	이	항	구	분	이	항					
담 보 대 출	농수산물 수출준비,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다만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이행분: 연 21.0%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연 10.0%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가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 회급 규정 제2조 제2항 "나" 호 대출어음: 연 10.0%					
								다만 대응수출 신용장 수령 불이행분: 연 21.0%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연 10.0%		
											이자 징수시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	연 10.0%
농협, 수산업, 회원사 업어음 (농협 및 수협 회계부)	연 10.0%	농협, 수산업, 회원사 업어음 (농협 및 수협 회계부)	연 10.0%									

수상업 퇴원사업어음 (보통 및 수입회계문)에 대하여는
1992. 6. 30 까지 다음에 의할을 적용한다

1438

1139

원	평	개	정 (안)
관주은행의 신안은행 등 증권당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율 적용대상 결정		그, 기타은행 등 증권당보대출에 대한 특별이율 적용대상	
1. 관주은행, 금정기관에 대한 기타은행 등 증권당보대출 특별이율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		(가) (원행과 같음)	
가. 연 12.0% 적용대상		가. (원행과 같음)	
(1) 1981년도 수출산업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			
(2) 1981년도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			
(3)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선화된 「에너지」 절약 1설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			
나. 연 15.0% 적용대상		나. 연 14.0% 적용대상	
(1)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한 대출		(1) (가) (원행과 같음)	
(2) 정책설비자금지원을 위한 대출			

원	평	개	정 (안)
(3) 저리복구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			
(4) 정부로부터 원금증자를 받은 중화학공업 산업 비상 장 저수익 주식보유에 따른 유상증자 불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			
(5) 언론기관의 「선전선론」 작성과 전달을 위한 결의 관련한 언론기관 통폐합에 따른 금융지원에 관한 대출			
다. 연 18.0% 적용대상		다. 연 17.0% 적용대상	
(1) 외화도시 채무상환자금 (환차) 지원을 위한 대출		(1) (가) (원행과 같음)	
(2) 수곡자금을 지원을 위한 대출			
(3) 기업보유국가 확장채권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			
(4) 지방자치단체 여신지원을 위한 대출			

1441

현	행	개	정 (안)
(5) 기타 산후조리원 용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금지원을 2천 대줄			
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 기준		국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 기준 : 연 10.0%	
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융자 이율을 현행 연 11.0% 에서 연 10.0% (단, 1982. 8. 30까지는 연 9.0%) 로 한다.			

1. 경과 조치

1. 1981. 3. 18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산업육성자금 대출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시까지 연 14.0% 적용대정으로 인정한다
2. 수출어음, 외화표시공급어음, 농수산물수출준비어음 및 농업 생산업, 회원기업어음 (농업 및 수렵수산업, 담배제조업, 특산물) 자금을 대하여는 1982. 8. 30 까지 다음의 이율을 적용한다
 - (1) 수출어음 및 외화표시공급어음
 - (가) 융자기간 135일 이내분 : 연 8.0%
 - (나) "수출금융규정" 제6조 및 "외화표시공급금 융자" 제4조 제1항 소정의 융자기간 배당품목의 경우 : 연 8.0%
 - (다)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화표시전설공사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1년 이내분 및 선박 또는 철도 차량으로서 융자기간 180일 초과 270일 이내분 : 연 13.0%
 - (2) 농수산물 수출준비어음
 - (가)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회계규정 제2조 제2항 "가"로 대출어음 : 연 8.0%
 - (나) 농수산물 수출준비 자금 융자회계규정 제2조 제2항 "나"로 대출어음 : 연 8.0%